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BA) 수행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1990~2009*

구 정 우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김 대 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주요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어느 정도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추동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공여국들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BA) 도입 수준에 있어 어떤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불리언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가능해 보고자 한다. 각국의 RBA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표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 파트너국의 인권지수와 원조금액 변동의 상관관계, 비구속성 원조 비율, 인도주의적 원조 비율, 참여개발 및 거버넌스 관련 지원 비율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준을 상(영국, 스웨덴, 캐나다), 중(미국, 독일), 하(프랑스, 일본, 한국)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낳는 조건으로 개발협력 집행 구조, 원조에 대한 국내 여론, 인권 친화적 외교정책, 시민사회의 역량을 가설적으로 고려하였다. 불리언 분석 결과 여론의 압력을 제외한 세 가지 조건들의 설명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제개발협력, 인권,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불리언 분석

*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정진성 선생님, 김왕배 선생님, 그리고 <인권사회학회> 회원들께 감사한다. <SSK 인권포럼> 및 <인권리서치그룹> 멤버들의 코멘트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국제·지역연구』의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3S1A3A2055081). 또한 성균관학술연구비(2010)의 부분적인 지원도 받았다.

** 제1저자

*** 공동저자

1. 서 론

전 세계적인 빈곤과 저발전의 확산, 테러 위협의 증가, 환경파괴의 심화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로 국제인권규범 및 제도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개발협력과 인권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촉진하되,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즉, 인권과 발전이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mutually reinforcing) 관계”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한걸음 더 나아가 안보를 추가하여, 이른바 3자 표현(tripartite formulation)을 정식화했다. 즉, “안보가 없으면 발전을 누릴 수 없고, 발전이 없으면 안보를 누릴 수 없으며, 인권 존중이 없으면 둘 다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주류화는 이제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UN, 2005).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 RBA)은 인권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다. RBA란 국제 인권 시스템의 규범, 기준, 원칙을 개발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RBA에 따르면 국제개발 혹은 발전의 과정은 국제 인권 규범에 근거해야 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Robinson, 2006). 몇몇 선진 공여국들은 국제개발협력정책에 이미 RBA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원조 국가 선정과 금액 배분 과정, 그리고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에 파트너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OECD DAC, 2009). 또한 파트너국 정부와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주인의식(ownership)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왔고, 세계은행은 더 나아가 ‘책무성 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김태균, 2012a).

학계에서도 국제개발협력, 특히 원조 정책과 인권 기준의 관계에 대한 연

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정치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에서 인권 기준의 적용 여부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카터 대통령 집권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미국의 인권 연계 외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Cingranell and Pasquarello, 1985; Poe, 1992). 경제학계에서는 원조 예산 배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인권 지표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기도 했다(Alesina and Dollar, 2000; Tuman and Ayoub, 2004).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RBA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거나, 대단히 협소하게 정의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가령, 파트너국의 국제인권지표와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의 변동이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되는가에 논의가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 일본 등 개별 공여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여국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을 얻기가 어려웠다.

또한 기존 연구는 RBA에 관한 사례 연구(case study)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RBA의 핵심 원칙들이 실제 개발 사업 및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았다(Rand and Gabrielle, 2007; Hamm, 2001). 가령, 사회간접시설구축사업, 교육사업, 우물개발사업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권적 관점이 반영되었는지를 논증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 가운데 RBA의 핵심 원칙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인권규범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 논문은 드물다. 더 나아가 RBA가 어떤 요인들로 인해 원조 정책에 도입되었는지를 사회과학적으로 해명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논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주요 공여국들의 원조 정책에 RBA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고, 이러한 RBA의 수행에 있어서 발견되는 국가 간 차이는 어떠한가, 이러한 차이를 유도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전체 OECD DAC 회원국의 RBA 유형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공여국들이 원조 정책에 인권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과 방식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여국들의 RBA 도입 및 수행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RBA 원칙이 등장한 배경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국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 간에 관찰되는 RBA 수행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RBA와 이론적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을 이론적 정당화 과정을 거쳐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RBA 통합지수를 구성한다. 이어서 RBA 통합지수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경험적 분석이 뒤따를 것이다.

본 논문은 인권 영역이 전통적인 사회과학 및 지역 연구의 영역이었던 개발 및 발전과 연계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RBA 수행 수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사회과학 및 지역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획되었다(Somers and Roberts, 2008; Woodiwiss, 2011). 본 연구는 RBA에 대한 기존의 정의 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핵심 요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보다 계량적, 실증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취지에서 RBA의 주요 원칙들을 가용한 자료 및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선정된 지표들에 따라 RBA 수행 수준의 국가 간 차이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 간 차이를 낳은 조건에 대해 탐색한다. 설명요인과 관련해서는 그간 행정학, 국제관계학에서 논의되었던 개발협력 집행구조, 외교정책의 특징과 함께, 사회학에서 크게 각광을 받아온 시민사회의 역량, 그리고 여론의 추이에 주목하여 설명적 이해를 시도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적은 수의 사례 비교에 적합한 기법으로 비교사회학에서 각광을 받아온 불리언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의 엄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II. RBA 등장배경 및 연구의 흐름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공적 개발원조의 기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은 동서간의 이념갈등으로 인해 촉발되었고, 우방에 대한 지원, 구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 수출 시장의 확보 등과 같은 공여국의

외교적, 경제적 목적에 의해 추동 되었다. 1970~80년대에는 국제정세 변화와 맞물려, 파트너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 즉, ‘개발 목적’의 원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부채문제, 저개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대로 접어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여성의 참여, 환경보호, 공공보건 강화, 거버넌스 확산, 인권신장 등 개발협력의 새로운 목적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었다(구정우, 2012; Lancaster, 2007).

그러나 RBA 담론의 등장을 촉발시킨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발전권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발전권에 관한 유엔 선언을 통해 발전이 개도국 및 그 국민들이 담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권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거치면서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이 근본적인 철학과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등장하였다(Riddell, 2007; 구정우·김대욱, 2011). 즉,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 또는 ‘발전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RBAD)’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Uvin, 2004; 보르 안드레아센 외, 2005).¹ 이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인권규범과 원칙들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입안, 수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많은 선진 공여국들이 점차 이 원칙을 수용해왔다(Gates and Hoeffler, 2004; Neumayer, 2003; 손혁상, 2011).

발전권 선언의 1조에서는 발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자결권을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조에서는 인간이 발전의 주체이며,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권 선언의 원칙과 기본 정신은 1990년대 이후 RBA로 구체화 되었다. 기존의 논의들은 RBA의 핵심 원칙으로 참여(participation) 및 권능화(empowerment), 비차별(non-discrimination),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1. RBA, HRBAD가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HRBAD가 RBA보다 인권의 원칙과 정신을 개발과정에 더욱 포괄적으로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두 개념을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Hamm 2001; Rand and Gabrielle, 2007).

첫째, 참여 및 권능화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의 전 과정에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아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개발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비차별의 원칙은 나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제반 차별을 금지하는 주요 인권규약의 원리를 따르며, 소외되기 쉬운 사회계층 및 그룹들, 특히 빈곤층, 여성,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 셋째, 굿거버넌스의 원칙은 민주적 제도의 확립이야말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인권 보장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굿거버넌스는 법에 따른 지배가 이루어지고,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이 보장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amm, 2001).

RBA의 주요 원리 및 구성 요소들은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할 만큼 구체성을 띠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측정할 수단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즉, RBA의 원칙들이 주요 공여국들의 정책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고, 어떤 국가가 RBA의 목표를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RBA를 측정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재개념화하고, 그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RBA의 추상적 원리를 원용하고 있는 연구들도 대체로 대외원조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인권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부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공여국이 원조자금 제공시 파트너국의 인권상황을 고려했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 왔다. 미국은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인권이 외교 정책의 근본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대외 원조 자금 배분에 있어 파트너국 정부의 인권 실태를 고려하였다(Lancaster, 2007). 특히 원조대상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파트너국의 인권상황을 고려했으나, 구체적인 금액 책정 시에는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Cingranelli and Pasquarello, 1985). 일본의 경우 1992

년 채택한 원조현장을 통해 파트너국의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인권이 악화된 국가의 경우 원조 금액을 줄였다는 분석도 제출되었다(Katada, 1997; Furuoka, 2005; Nikitina and Furuoka, 2008). 네덜란드 역시 전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와 수리남의 인권상황이 악화되자 모든 원조를 중단했다는 보고가 있었다(Poe, 1992; Lancaster, 2007; Donnelly, 1998).

한편 RBA가 실제 개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렐린(Sarelin)은 개발 관련 국제민간단체(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인 케어 인터내셔널이 말라위에서 진행했던 HIV/AIDS 경감사업에 RBA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저자는 RBA를 이행지침으로 삼을 때, 인권기반 상황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Sarelin, 2007). 한편 슈미츠(Schmitz)는 또 다른 개발 협력 국제민간단체인 플랜 인터내셔널이 2003년부터 수행한 아동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에서 RBA 원칙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의무담지자로서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부각되었으며, RBA의 실천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chmitz, 2011). 국내에서도 RBA에 관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한국인권재단(2007)은 한국의 필리핀 마닐라 남부 통근철도사업과 일본의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을 RBA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김강이(2011)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노르위전 처치 에이드(Norwegian Church Aid: NCA)의 에티오피아 식수 개발 사업을 RBA의 주요 원칙을 활용하여 만든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공여국과 민간단체들이 인권을 개발협력 정책과 실행 과정의 주요한 원칙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주류화에 대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RBA를 인권 개선을 위한 양자 간 제재 수단으로만 좁게 정의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 공여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에서는 공여국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 결론 및 일반화된 이론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개

발협력 현장에서 RBA가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들 역시 사회과학적 이론화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즉, RBA가 공여국들의 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로 진행되었는지를 밝히려는 경험적 시도는 드물었다. 더 나아가, 원조 공여국들 간에 발견되는 RBA 수준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 그리고 향후 RBA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RBA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그 자체로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입을 요구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지표들 가운데에서 RBA와 관련이 깊은 것들을 선별하고,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여,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실용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공여국들이 대외원조 정책에 국제인권 규범과 원칙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 개선국가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조를 늘렸고, 인권 악화국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원조를 줄였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최빈국에 대한 원조 비율, 인도주의적 원조의 비율,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 등도 인권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RBA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가 가용하고, 인권이론의 차원에서 정당화가 가능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통합 지수를 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여국들의 RBA 수행 수준을 잠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국가 간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한 설명적 분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공여국으로 전체 원조 규모 상위 5개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GNI 대비 원조 비율이 가

장 높은 공여국인 스웨덴(Dreher, et al., 2007),² 최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ODA를 강조하는 <ODA 책무법>이 통과된 캐나다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흥 공여국이자 국제 원조 무대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시켰다. 해당 국가들은 전체 OECD DAC의 원조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 원조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은 역사적, 방법론적 고려 속에서 선정되었다. 우선 역사적으로 권리에 기반을 둔 원조 정책이 전 세계적인 원조 규범으로 등장하여 공여국들의 원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는 RBA가 심화, 확대된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방법론적 차원에서는 시계열적인 국가 간 비교 분석 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간적 프레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Milner and Tingley, 2010; Hook and Zhang, 1998; Drury et al., 2005).

8개 공여국들의 RBA 수행의 국가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친 인과적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비교사회학의 방법론 중 하나인 불리언 분석(Boolean Analysis)을 활용한다. 불리언 분석은 국가와 같은 거시사회단위(macro social unit)와 연관되는 거시적 사회현상(사회혁명, 민주주의의 등장, 복지국가 형성 등)의 결합적 인과성(conjunctual causation)을 해명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으로써, 비교사회학의 대표적인 접근법인 사례 중심적, 변수 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적 분석기법으로 각광을 받았다(Ragin, 1987). 이 관점에 따르면 사례 중심적 접근법은 도출된 인과성이 특수한 케이스(들)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변수 중심적 접근법은 변수 하나가 갖는 독립적 인과적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 및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산출해 내는 결합적 인과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불리언 분석은 논리대수 혹은 집합대수로도 알려져 있으며, 전자공학 등 공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 분석기법이다. 불리언 분석은 간결성과 총체성을

2. 모두 2009년 기준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원변수로 구성된 변수 및 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해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이원변수로 구성된 설명변수들의 조합 가운데 설명하고자 하는 결과의 발생에 조응하는 조합들에 주목하고, 이 조합들이 왜, 어떻게 특정한 결과를 낳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불리언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진리표(truth table) 작성 단계이다. 진리표의 핵심은 이원변수로 측정되는 설명 변수들 간의 가능한 조합을 나열하는 것이다. 이 조합들 중 결과변수에서 진리 혹은 사건이 발생한 열들에 해당하는 조합들에 주목하여, 어떤 결합인과성의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간결화(minimization) 단계이다. 설명변수들 간의 조합들 중에서 인과방향에 차이가 나는 요인 하나를 제거하여, 보다 간결한 인과적 조합을 도출한다. 세 번째는 간결화 단계 이전의 조합들(primitive expressions)과 간결화된 조합들(prime implicants)을 상호 교차시켜, 비본질적인 조합 및 쌍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 가장 본질적인 결합 인과적 조합 및 쌍들이 남게 되며, 이를 통해 간결성(parsimony)의 원리에 합치하는 인과적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불리언 분석의 본격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우선, 완전한 의미에서 불리언 접근을 취하기에는 사례수가 적고 결과변수와 설명변수들이 이원쌍이 아닌 삼원쌍(상, 중, 하)으로 구획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밀즈(Mills)가 제안한 일치법에서 영감을 받은 불리언 분석의 일차적 단계, 특히 간결화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 간 RBA 수행의 차이를 설명하는 보다 본질적인 인과적 조합을 찾아내고자 한다.

8개의 사례는 통계적 자유도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숫자는 아니지만,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역사적 자료를 탐색하는 것은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각 공여국의 관련 법령, 정책문서, 동료평가(peer review) 결과 및 각종 보고서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RBA 통합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은 계량적인 원칙을 적용했는데, 하위 지표들을 선정하여 각각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지표 값을 합산하는 방식을 따랐다. RBA 단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중간 수준으로 국가들을 분류하고, 이 결과와 설명변수들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했다.

공여국들 간의 RBA 이행 수준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를 낳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작업은 RBA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일이다. 아직까지 RBA를 명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 및 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공여국들이 원조 정책 수행 과정에서 파트너국의 정부, 시민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지(참여 및 권능화), 이 과정에서 차별이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지(비차별)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각 공여국의 원조 대상국은 보통 100개가 넘기 때문에, 공여국 간의 RBA 달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지표의 구성은 그 자체가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다. 즉, RBA 지표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전제로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던 ODA와 관련된 국가간 비교연구 지표들에 대해 새로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표 중 RBA의 원칙에 최대한 근접한 지표들을 추출하여, 이를 이론적 차원에서 정당화하여 활용하는 해안이 필요하다. 특히, ODA 예산 집행의 내용을 측정하는 다양한 평가지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DA 예산 집행이란 고도의 외교적 행위이고, 여기에 인권의 원리가 얼마나 접목되는지는 평가 지표들을 통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RBA 통합지수 및 자료

각 공여국들의 RBA 수준을 평가하고 국가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이다. 공여국의 전체 양자 원조 가운데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을 측정했다. 둘째, 파트너국의 인권지수와 원조금액 변동의 상관관계이다. 파트너국의 인권상황은 미국의 프리덤하우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유지수를 활용했다. 인권 지수가 발표되고 원조 예산 배분에 반영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년의 타임 래그(time lag)를 부여해서 인권지수의 변동 수준과 원조액 변화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셋째, 인도주의적 원조 비율이다. 이는 공여국의 전체 양자 원조 가운데 인도주의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넷째,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다. 공여국의 전체 양자 원조 가운데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확인했다. 다섯째, 참여개발 및 굿거버넌스(participatory development/good governance) 지원 비율이다. 공여국의 전체 양자 원조 가운데 참여개발 및 굿거버넌스 관련 지원 비율을 활용했다. 이 지표는 OECD DAC이 각 공여국으로 하여금 매년 통계를 보고하도록 한 정책 마커 중의 하나이다. 인권은 굿거버넌스의 하위 범주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OECD DAC, 1995). 본 지표는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평가 기준으로 포함하였다. 이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은 20년 전 관찰 기간 동안 측정되었다.

이상의 다섯 가지의 지표를 RBA 통합지수의 하위 요소로 선정하게 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1986년 발전권 선언 이후 개발도상국들 특히, 차별 및 배제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최빈국들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UN, 2009) 이런 흐름이 새천년 개발목표의 수립으로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발전권에 대한 논의의 근저에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을 시혜가 아닌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최빈국에 대한 원조 확대는 세계경제의 발전 과정 속에서 가장 배제되어온 국가그룹에 대해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즉, 그 동안 차별 받고 소외되어온 국가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지수와 원조금액 변동의 상관관계는 공여국들이 원조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파트너국들의 인권 상황(특히, 인권의 개선 및 후퇴)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프리덤하우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유지수는 각국의 국제인권규범 준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정진성 외, 2010). 인권 침해국에 대한 원조, 특히 전년 대비 인권 수준이 악화된 국가에 대해 원조를 늘리는 것은 인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권장하는 국제규범에 위배된다(Cingranelli and Pasquarello, 1985). 따라서 공여국들은 원

조 예산 배분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이 개선된 국가에 원조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표화를 위하여 파트너국들의 국제인권지표의 점수 변화와 해당 파트너국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 금액 변동의 상관관계를 수치화 하였다. 비록 인권 침해국이라고 하더라도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여국들이 원조를 늘리는 것이 RBA의 원칙에 적합한 원조 배분 방식이라고 가정하였다.

한편 인권개선 및 후퇴와 원조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따라서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원조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은 각종 재해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정의된다. 재난 예방 및 대비, 재건 구호, 구호 조정, 긴급 식량지원 등이 모두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포함된다(홍문숙 외, 2012).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식량, 물, 주거에 대한 접근권은 경제, 사회적 권리 중 생존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국제 인권 규범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RBA의 근본 목적에 부합한다. UN이 수용한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인 인도(humanity), 공평(impartiality), 중립(neutrality), 독립(independence)은 RBA 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의 비중이 높은 공여국의 경우 보다 인권 친화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인도적 지원 비율을 RBA 평가 지표로 포함시켰다.

구속성 원조는 원조 공여과정에서 공여국의 물자와 인력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성 원조에는 공여국의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속성 원조는 RBA의 핵심적인 원칙인 비차별의 원리에 위배되고, 원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파트너국의 기업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권능화의 기회를 차단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RBA의 관점에 따르면 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들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은 공여국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³

마지막으로 참여개발 및 굿거버넌스 지표는 OECD DAC의 원조 정책목표 평가 마커 가운데 하나이다. 평가 마커를 활용하여 각 공여국들이 주요 국제 규범에 얼마나 잘 조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젠더, 환경, 참여개발 및 굿거버넌스, 무역개발 마커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 지표는 각 공여국이 파트너국에서의 참여적 개발 및 굿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책 마커 가운데 하나로 이 지표가 포함된 것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굿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 원조 사회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적 개발은 RBA의 핵심적인 원칙인 파트너국 주민들의 참여와 직결된다. 개발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거버넌스 향상을 유도하고, 거버넌스가 향상되면 참여권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두 지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세부 항목으로 인권 지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RBA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각국의 점수를 총점 1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였다.⁴ 그리고 연도 및 세부지표별 점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평가 대상 국가들의 등급을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상위 3개 국가를 상위 그룹, 하위 3개 국가를 하위 그룹, 그리고 중위 2개 국가를 중위그룹에 배치하였다.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영국, 스웨덴, 캐나다가 상, 미국, 독일이 중, 일본, 프랑스, 한국이 하로 분류되었다.⁵ 즉, 상위 그룹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RBA를 충실히 수행해온 국가로, 하위 그룹은 RBA 원칙을 원조 관행에 거의 반영하지 않은

-
3. 수원국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구속성 원조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속성 원조를 인권의 원칙과 상치되는 개념으로 단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 지적해 준 『국제지 역연구』의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4. 표준화를 위해 사용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점수-최저점수)/(최고점수-최저점수) 이를 통해 지표별 값의 변화를 0-1 사이로 통제하였다. 여기서 특정 국가의 점수의 추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RBA 수준의 개선 추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는 단지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 격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각국의 연도별 세부지표의 점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연대별 국가 순위를 매겼다. 이후,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년 전 기간 각각의 평균 순위를 도출하여,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임의적으로 상위와 하위에 각각 3개의 국가, 중위에 2개의 국가를 배치하였다.

〈표 1〉 RBA 수준 국가군의 시기별 분류

	1990년대	2000년대	전체 기간
상위 3개 국가	스웨덴, 영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중위 2개 국가	독일, 미국	미국, 독일	미국, 독일
하위 3개 국가	일본, 프랑스, 한국	프랑스, 일본, 한국	일본, 프랑스, 한국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위 그룹은 그 중간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본 논문이 고려하는 방법론이 이원쌍을 기본으로 하는 불리언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삼원쌍을 분류 방식으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류의 대상이 되는 RBA의 하위 지표들이 모두 양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이원화가 자연스러운 역사적 사건 및 상태(가령, 혁명의 유무, 농지개혁의 유무 등)에 비해,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설명변수로 고려된 요인들 역시 양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고히 인정되는 두 개의 상태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들의 그룹 배치를 3-2-3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주어진 분석대상 국가들을 균형감 있게 삼원쌍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같은 그룹에 속한 같은 숫자의 국가들의 RBA 지수와 설명지수들을 연결시켜보고, 궁극적으로 분석의 편이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엄격한 양적인 분류점(cutting point)을 통한 국가의 구분은 하나의 그룹에 너무 많은 국가가 몰리거나 혹은 너무 적은 국가가 배치되어 분석의 용이성을 방해할 수 있다.

〈표 1〉은 이상과 같은 논리를 통해 국가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두 시기를 더해서 분석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국가 분류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그룹 내에서는 일정한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 영국이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점, 독일이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로 와서 한 단계 하락한 점, 그리고 하위그룹 중 최상위였던 일본이 2000년대에 들어서 프랑스에 그 자리를 내 준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 불리언 분석은 국가그룹 간 차이 및 차이를 낳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그룹 내의 순위 변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불리언 분석이 소수의 사례에 대한 질적인 해석을 목표로

하고, 사례 중심적 연구와 변수 중심적 연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각 그룹에 배치된 국가 사이에 어떠한 순위 변동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원조 정책의 RBA 도입 수준의 국가별 차이를 낳는 조건은 개발협력 집행 구조, 원조에 대한 국내 여론, 외교정책의 전반적 특징, 시민사회의 역량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다음 절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개발협력 집행 구조는 전체 양자 원조 가운데 무상/유상원조 비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원조에 대한 국내 여론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와 유로피안 바로미터(European Barometer)에 포함된 국민들의 대외원조 지지 수준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국의 외교정책의 전반적 특징은 UN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주요 인권조약 가입 여부 및 시점 정보를 확인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시민사회의 역량은 국제협회연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2>에는 본

<표 2> 자료 목록 및 출처

구분		설명	출처
RBA 측정 지표	최빈국 지원	전체 양자원조 가운데 최빈국 지원 비율(국가 분류 가능 금액 대상)	OECD DAC 통계
	인권지수와 원조금액의 상관관계	파트너국의 인권지수 변동과 원조금액 변동의 상관관계	OECD DAC 통계, Freedom House
	인도주의적 원조	전체 양자원조 가운데 인도주의적 원조 지원 비율(분야 분류 가능 금액 대상)	OECD DAC 통계
	비구속성 원조	전체 양자원조 가운데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DAC 통계
	참여개발·굿거버넌스 지원	참여개발 및 굿거버넌스 관련 지원 비율	OECD DAC 통계
RBA 영향 요인	개발협력 집행구조	전체 양자 원조 가운데 무상/유상원조 비율	OECD DAC 통계
	여론의 지지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수준	세계 가치관조사 및 유로피안 바로미터
	외교정책 노선	주요 인권조약 가입 여부 및 시점	UN 아카이브
	시민사회의 역량	각 국가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제 민간 단체의 수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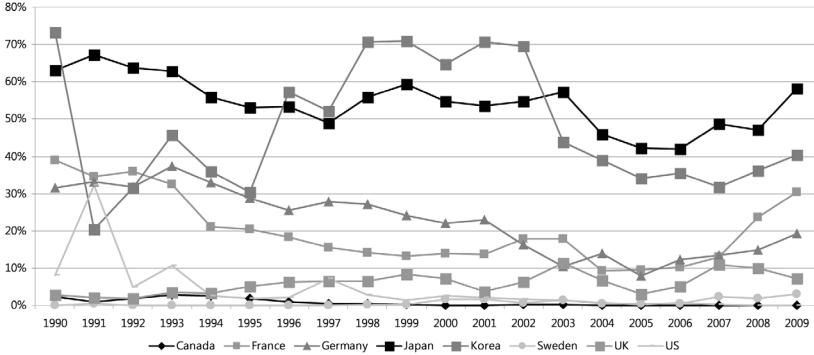
연구에 활용된 자료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

V. RBA의 국가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RBA의 국가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개발협력 집행 구조, 원조에 대한 국내 여론, 외교정책의 전반적 특징, 시민사회의 역량을 선정하였다. 이 지표들이 선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협력 집행 구조가 경제 부처 중심으로 짜여 있다면 경제적 국익 추구로 인해 RBA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국민들이 원조에 대해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도 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를 강조하게 되어서 RBA 도입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처럼 각국의 대외 정책의 전반적 특성에 따라 국가별 원조 전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은 원조 정책의 RBA 요소를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1. 개발협력 집행구조

기존 연구들은 공여국들의 정책 목표를 공여국의 이익추구와 파트너국의 필요 충족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McKinlay and Little, 1977; Maizels and Nissanke, 1984; Alesina and Dollar, 2000; Berthelemy and Tichit, 2002; Neumayer, 2003; Tuman and Strand, 2006). 공여국들은 이 두 가지 정책 목표의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런데, 개발협력 집행구조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즉, 개발협력의 주도권을 어떤 부처가 갖느냐에 따라 정책 목표에도 큰 차이가 생긴다는 분석이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a; Tingley, 2010). 대체로 분절된 구조로 경제부처가 원조 정책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공여국의 이익 추구를 원조에 연계시키는 경향이 강하



자료: OECD DAC 통계

〈그림 1〉 유상원조의 비율

다. 분절된 집행구조에서는 대체로 경제부처가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유상원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공여국의 무역, 수출, 자원 획득과 원조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부처의 관료 및 전문가들은 개발협력의 인도적·보편적 목적보다는,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 파트너국에서의 자국의 경제적 기반 확충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김은미 외, 2010; 정상희, 2011; 장현식 외, 2007).

명제 1: 외교부처 혹은 비경제부처가 원조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경제부처가 주도하는 국가들에 비해 개발협력 과정에서 RBA원칙 적용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경제부처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결정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유상원조의 비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원조 정책의 목표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원조를 통해 경제적 국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상원조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 부처가 원조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채무 탕감 운동 과정에서 유상원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최빈국들이 유

상원조로 인해 빛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들은 유상원조를 대폭 감축하거나 전면 중단했다.⁶ 본 연구에서는 상환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총(gross)지출을 기준으로 유상원조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20년 동안의 유상원조 비율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 국가들을 상(캐나다, 스웨덴, 미국), 중(영국, 프랑스), 하(독일, 한국, 일본)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추이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여론의 지지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추구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대외원조 관련 여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호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를 확장시키면 RBA 도입의 국가 간 차이를 낳는 또 다른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즉, 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여론의 지지가 확고한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원조 목적을 설정할 것이며, 외교 및 경제적 국익에 얽매이지 않고 원조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인권, 거버넌스 등 새로운 원조 목적들을 더 적극적으로 원조정책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민들의 지지가 약한 공여국의 경우에는 대외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를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RBA 도입에 적극적인 스웨덴의 국민들은 원조 규모 확대를 주장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본, 미국 등의 여론은 원조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World Value Survey, 2009; 이상백,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b).

명제 2: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국가들이 지지가 낮은 국가들에 비해 개발 협력 과정에서 RBA 원칙 적용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6. 물론 무상원조를 100%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RBA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상원조 중심의 집행구조에서는 RBA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각 공여국의 유상원조 비율을 활용하여 개발협력 집행구조의 RBA 친화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표 3〉 대외 원조에 대한 각국의 여론 평가 결과

	캐나다	독일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1995~99	-	0.9(WVS)	0.9(WVS)	0.6(WVS)	-0.1(WVS)	-	-
2000~04	0.1(WVS)	-	-0.1(WVS)	-	-	-	-
2005~09	0.5(WVS)	0.4(WVS)	0.0(WVS)	0.9(WVS)	0.2(WVS)	-	-
	-	1.4(EBM)	-	1.5(EBM)	-	1.3(EBM)	1.2(EBM)
평균	0.3(WVS)	0.7(WVS)	0.2(WVS)	0.8(WVS)	0.1(WVS)	-	-
	-	1.4(EBM)	-	1.5(EBM)	-	1.3(EBM)	1.2(EBM)

자료: 세계 가치관 조사(WVS) 및 유로피안 바로미터(EBM)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수준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조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국가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RBA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커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와 유로피안 바로미터의 관련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평가하였다. 〈표 3〉의 점수가 높은 국가 또는 시기일수록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다.⁷ 세계 가치관 조사의 경우 스웨덴,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순으로 원조에 대한 지지여론이 강했다. 유로피안 바로미터는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의 순이었다. 두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 대상 국가들에서의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수준을 상(스웨덴, 독일, 영국), 중(프랑스), 하(캐나다, 일본, 미국)으로 구분하였다.

7. 세계 가치관 조사 1-4차에서는 다섯 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가난한 나라에 대한 경제원조를 현재에 비해, 훨씬 많이/조금 많이/비슷하게/조금 적게/아주 적게 해야 한다) 반면 5차 조사에서는 세 개의 선택지만 제시되었다. (자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너무 적다/적당하다/너무 많다) 한편 유로피안 바로미터의 관련 문항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이고,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매우중요/꽤중요/별로중요하지않음/전혀중요하지않음/모름) 한편, 한국은 관련 설문 문항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표 3〉의 점수는 긍정적 응답에 대해서는 양의 부호, 부정적 응답은 음의 부호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선택지가 다섯 개인 경우 각각 +2/+1/0/-1/-2점을 부여하고, 해당 보기에 대한 응답 비율을 곱하는 과정을 통해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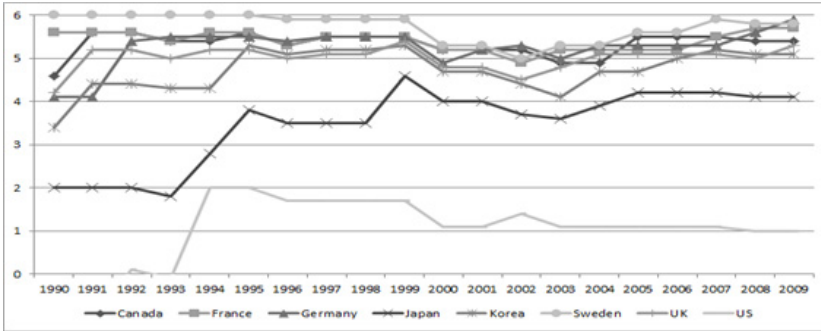
3. 외교정책 노선

개발협력을 포함한 기본적인 외교정책의 골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각국의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인권에 우호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여국의 외교정책 노선에 따라서 대외원조의 목적이 달라져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000년 9/11 이후 미국 외교정책 노선이 대 테러리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잠재적 테러국가들인 ‘취약국’에 대한 원조가 늘어난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Barry, 2006; Tijen and Moskowitz, 2009; 김성현, 2007).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 이래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세계의 양심’,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의 이미지 전파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30~40여 년간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원조국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고세훈, 2011; 김인춘, 2011; 김치욱, 2009). 각국의 외교정책의 인권 친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여부와 그 시점을 들 수 있다. 이 지표를 활용하여 인권 친화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국가군과 그렇지 않은 국가군을 구분하였다.

명제 3: 국제인권레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서 개발협력 과정에서 RBA 원칙 적용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여부를 통해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 노선에서 국제인권규범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주요 6개 국제 인권 조약⁸의 비준 여부 및 시점을 확인했다.⁹ 인권조약을

8. 조약 이행감독기구(treaty body)가 있는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인종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시민정치적권리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사회문화적권리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자료: UN 아카이브

〈그림 2〉 각국의 주요 인권 조약 비준 평가

더 많이, 더 일찍, 더 완전하게 비준한 국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계하였다. 조약 비준 여부에 1점,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에 0.3 점을 부여하였다. 유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항 당 0.1점을 감점하였다. 그리고 더 일찍 조약을 비준한 국가가 더 많은 점수를 얻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평가 결과, 상(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중(독일, 영국), 하(한국, 일본, 미국)로 국가군이 구분되었다. 특히 미국은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를 표방하며 인권규약 비준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개발협력력을 포함한 외교정책에 인권 기준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4. 시민사회의 역량

국제개발협력력의 진화 과정에서 민간단체(NGO)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포함하였다. 한편 이주노동자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도 이행 감독기구가 존재하지만 비준국가 수가 많지 않고,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2008년에 발효되었으므로 제외하였다.

9. CESCR의 OPT, OPT Article 10/11, CEDAW의 amendment re: Article 20(1)은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비준국가가 없으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민간단체들은 1970~80년대부터 원조관련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여 개발 목적 원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도 이들은 공여국 간의 정책 조율 부재, 분절화된 원조체제, 주인의식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Hans, 2011; Zafarullah and Rahman, 2002; Koch,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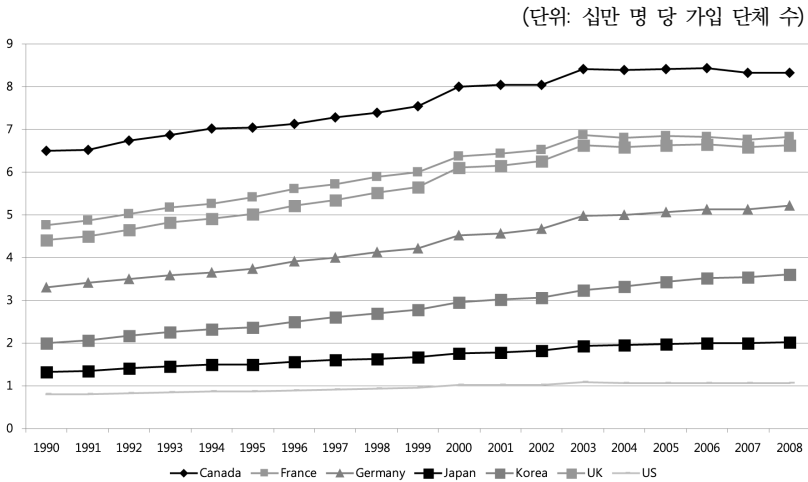
한편, 1990년대 이후 국제인권레짐의 팽창 및 확산, 인권의 대중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역시 NGO였다. 국제인권 민간단체들은 인권침해국가들을 비판하면서 국제인권의 도덕적 전도사로 자리매김했다. 각 국가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국가보다 NGO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Hafner and Tsutsui, 2005). 각국 정부들은 NGO들로부터 도덕적 지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NGO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관행이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김태균, 2012b; Tarrow, 2005; Murdie and Davis, 2012).

명제 4: NGO의 숫자가 많고 활동이 왕성한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개발협력 과정에서 RBA 원칙 도입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제민간단체의 수이다.¹⁰ 국가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0만 명당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민간단체의 수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다른 국가에 비해 수치가 월등하게 높은 스웨덴은 그림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의 민간단체 가입 수준을 상(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중(영국, 독일), 하(한국, 일본, 미국)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4>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상/중/하

10.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단체 가운데 인권친화적인 단체들을 선별하여 그 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8개국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한 본 논문의 특성상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자료: 국제협회연합(UIA)

〈그림 3〉 국제민간단체 가입 수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배치된 위치는 각 국가의 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즉, RBA 수준에서 영국이 1위, 미국이 4위, 그리고 한국이 8위이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RBA 수준 측정 지표와 설명변수인 RBA 영향요인 지표의 국가군 분류가 대체로 일치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정확히 일치하거나 한 단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선, RBA 수준이 상으로 평가된 국가들 중 스웨덴, 캐나다의 경우 설명변수 역시 대체로 상으로 평가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모든 설명변수가, 캐나다는 여론의 지지를 제외한 세 개의 변수가 상으로 평가되었다. 영국의 경우 여론의 지지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가 중으로 평가되어, 한 단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위그룹에서는 독일이 외교정책 노선과 시민사회 역량 두 요인에서 중으로 평가되어, 종속변수의 단계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 개의 요인이 하로, 한 개의 요인이 상으로 평가되어, 일치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로 분석되었다. RBA 수준이 하로 평가된 국가들 중 일본은 네 개의 설명변수가 모두 하로 평가되었고, 한국도 평가 대상인 세 개의 요인이 모두 하로 분석되어,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설명이 어려운 사례이다. 프랑스의 외교정책 노선

과 시민사회의 역량은 상, 개발협력집행구조와 여론의 지지는 중으로 평가되었으나 RBA 수준은 하 그룹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VI. 불리언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불리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간결화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우선,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패턴을 보여주는 진리표는 〈표 5〉와 같다. 표의 왼쪽의 네 열은 네 가지 설명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 개의 열은 초보적 수준의 불리언 분석을 세 가지 쌍, 즉 〈상위-비상위〉, 〈하위-비하위〉, 〈중위-비중위〉에서 수행할 때, 각각의 진리 값(1)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표기되어 있다. 가령, 상위그룹에 속한 세 국가들(캐나다, 스웨덴, 영국)은 그 진리값과 함께 다섯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불리언 분석의 원칙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 RBA 수준에 영향을 미친 원

〈표 4〉 RBA 수준 및 영향 요인의 국가 구분

구분	RBA 수준	영향 요인				
		개발협력 집행구조	여론의 지지	외교정책 노선	시민사회의 역량	
지표	최빈국 지원, 인권지수·원조금액의 상관관계, 인도주의적 지원 비구속성 원조, 참여개발·굿거버넌스지원	무상/유상 원조 비율	원조에 대한 지지 여론	인권조약 가입 여부시기	INGO 가입 수	
평가	상	영국 스웨덴 캐나다	캐나다 스웨덴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프랑스	독일 영국	영국 독일
	하	일본 프랑스 한국	독일 한국 일본	캐나다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표 5〉 진리표: RBA 수행 수준 결정요인

집행구조	여론지지	인권외교	시민사회	상위그룹 (1=상위; 0=중,하위)	하위그룹 (1=하위; 0=상,중위)	중위그룹 (1=중위; 0=상,하위)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1	0	0	1 (영국)	0	0
1	0	0	0	0	0	0
0	0	1	1	0	0	1 (독일)
0	1	1	0	0	0	0
1	1	0	0	0	0	0
1	0	0	1	0	0	0
1	0	1	0	0	0	0
0	1	0	1	0	0	0
0	1	1	1	0	0	0
1	0	1	1	1 (캐나다)	1 (한국)	0
1	1	0	1	0	0	0
1	1	1	0	0	0	0
1	1	1	1	1 (스웨덴)	1 (일본)	0
0	0	0	0	0	1 (프랑스)	1 (미국)

초적 요인들(primitive factors)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문자는 각 해당 수준에서 1의 값을 갖는 국가를 의미하고, 소문자는 각 해당 수준에서 0의 값을 갖는 국가를 의미한다. 불리언 규칙에 따라 곱셈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그리고(and)’를 의미하고, 덧셈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혹은(or)’을 의미한다. 가령 RBA 상위그룹과 일치하는 조건들의 쌍은 AbCD(캐나다) 혹은 ABCD(스웨덴) 혹은 aBcd(영국)이며, 여기에서 AbCD는 〈개발협력구조-상〉, 〈여론지지-중 혹은 하〉, 〈외교정책-상〉, 〈시민사회-상〉을 뜻하며, aBcd는 〈개발협력구조-중 혹은 하〉, 〈여론지지-상〉, 〈외교정책-중 혹은 하〉, 그리고 〈시민사회-중 혹은 하〉를 의미한다.

$$\text{RBA 상위} = \text{AbCD} + \text{ABCD} + \text{aBcd} \quad (\text{등식 1})$$

$$\text{RBA 하위} = \text{AbCD} + \text{ABCD} + \text{abcd} \quad (\text{등식 2})$$

$$\text{RBA 중위} = \text{abCD} + \text{abcd} \quad (\text{등식 3})$$

(A=개발협력 집행구조, B=여론의 지지, C=외교정책 노선, D=시민사회 역량)

다음으로 간결화의 단계를 거쳐 각 요인들의 조합 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하나의—비본질적—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 (등식 1)과 (등식 2)가 다음과 같이 (등식 4)와 (등식 5)로 간소화된다. 즉, 여론의 압력 요인이 제거되는 것이다. 반면, 중위권 국가를 다루는 (등식 3)에서는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즉, 독일과 미국을 관통하는 본질적 혹은 비본질적 요인은 도출되지 않는다.

$$\text{RBA 상위} = \text{ACD} + \text{aBcd} \quad (\text{등식 4})$$

$$\text{RBA 하위} = \text{ACD} + \text{abcd} \quad (\text{등식 5})$$

따라서 RBA 상위 그룹의 경우 개발협력 집행구조, 외교정책 노선, 시민사회 역량 세 가지 요인이 본질적인 요인이며, 캐나다와 스웨덴이 적용 사례이다. 영국은 여론지지 요인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중이거나 하인 경우로써, 예외적 사례이다. RBA 하위 그룹의 경우에도 개발협력 집행구조, 외교정책 노선, 시민사회 역량의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했고, 해당되는 국가들은 일본과 한국이다. 한편 프랑스의 RBA 수행 수준은 하위 그룹으로 평가되었지만, 설명요인들은 상위 또는 중위그룹에 속했다. 따라서 프랑스적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프랑스는 프랑코폰(Francophone)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대외원조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공여국의 외교적 이해 추구’라는 개발협력의 대원칙을 바꾸기에는 역사적 관성이 크다. 한편 영국은 비록 RBA 추구에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지만, <국제개발법>을 제정하는 등 RBA를 국제개발협력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이러한 노력이 RBA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설명 요인들 사이의 상충성은 인권 개념의 복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VII. 불리언 분석 결과와 결합적 인과성(Conjunctural Causation)

불리언 분석은 여러 가지 인과적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으로 사회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변수들의 독립적인 인과효과에 관심을 갖는 통계적 분석과 대별된다. 상호작용적 인과성에 주목하는 불리언 분석의 기본 전제를 염두에 두고, 앞서 제시된 불리언 분석의 결과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원칙적으로, 각국의 원조 정책에서의 RBA 도입 수준은 각각의 설명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설에서 제안되었던 네 가지 요인 중 여론의 압력을 제외한 개발협력 집행 구조, 인권 친화적 외교 정책, 시민사회의 역량이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쳐 각국의 원조패턴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BA 수준이 상위 그룹에 속한 국가 가운데 스웨덴, 하위 그룹의 한국을 사례로 주요 설명 변수들의 상호 작용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중위 그룹에 속했던 독일의 사례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인권개선을 원조의 중요한 목적과 조건으로 설정(Gates and Hoeffler, 2004) 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것은 스웨덴 원조정책의 일관된 목표였다(Selbervik and Nygaard, 2006). 스웨덴은 1978년에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개발협력의 공식적인 목표로 수용하였다. 또한 2003년에 통과된 개발협력법안에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인권적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OECD DAC, 2009).¹¹ 스웨덴이 원조 정책에 RBA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

11. 본 연구에서 RBA 상위 그룹으로 평가된 영국과 캐나다도 원조정책에 RBA 원칙을 도입·적용한 역사가 길다. 영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좋은 정부(good government) 기준을 원조 배분 결정 기준으로 강조했다. 또한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은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향상과 빈곤퇴치에 있다고 천명하였다(한국인권재단, 2007). 한편 캐나다는 1992년국제개발청(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에 굿거버넌스와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면서, 원조 정책에서도 RBA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8년에는 ODA는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손혁상, 2011).

입할 수 있었던 배경을 스웨덴 특유의 개발협력 집행 구조, 외교 정책의 흐름, 시민사회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962년 스웨덴 의회는 “개발협력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평화와 안보, 연대, 통상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개발협력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965년에는 스웨덴 개발협력청(The Swed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DA)이 설립되었다. 즉, 외교부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장관이 있고, 관련 업무의 총괄은 스웨덴 개발협력청이 맡고 있는 구조이다(한국인권재단, 2007). 스웨덴의 개발협력 집행구조는 개발협력 전달기구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개발협력 집행구조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복지국가 모델, 국제주의 전통 등을 포함한 인권 중심적 외교정책과 결합되면서, RBA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된다(고세훈, 2011).

이러한 외교 정책의 목표들은 연대성, 포용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스웨덴 사회의 문화적 토양과 긴밀한 연관이 있고, 나아가 인도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신뢰와도 관련이 깊다. 이러한 ‘사회화된 국가’의 전통, 그리고 개발협력 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덕분에 원조 정책입안/수행자들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적, 협력적 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스웨덴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로부터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0개 이상의 스웨덴 NGO들은 개발협력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양자 원조 프로젝트 지원 비율 역시 25%로 매우 높은 편이다(김인춘, 2011; OECD DAC, 2009). 스웨덴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제고 및 교육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가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다(OECD DAC, 2009). 이와 같은 요인들을 통해 스웨덴은 모범적인 방식으로 RBA를 달성할 수 있었다.

RBA 수행 수준 하위그룹에 속하는 한국은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이 결합인 과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스웨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례이다. 한국은 1960~70년대에 차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달성한 경험이 있

다. 또한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국가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는 예산배분 등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의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다른 공여국에 비해 유상원조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 함께 제시된 것도 한국에서는 개발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유상원조의 영향력이 큰 한국의 개발협력 집행 구조에서는 원조 정책에 RBA를 고려하는 관점은 설 자리가 없었다.

외교부가 원조정책 수행과정에서 인권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외교정책 노선에 인권적 관점이 중요한 외교적 프레임임으로 고려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ODA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여외교를 통해 국격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본격적인 인권외교의 출발로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결국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및 자원외교와 같은 경제적 국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은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외교는 여전히 담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이성훈, 2012). 국제 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회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고, 자유권규약의 단결권 조항을 유보하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는 등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NGO들의 역사도 매우 짧은 편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들의 대표적인 연대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1999년 출범했지만, 회원 단체수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80여 개에 불과하다. 한국의 인권 NGO들은 최근 정부의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정부가 개발협력 정책에 RBA의 원칙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NGO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NGO와의 협치를 통해 인권원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

물이 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양자원조 가운데 NGO를 통한 지원 비율은 1%로 다른 공여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NGO가 개발협력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정부와 NGO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일정한 합의점을 찾긴 했으나, 이 합의가 이행되고, NGO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 되기까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RBA를 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맥락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독일의 개발협력 집행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KfW 개발은행, 독일기술협력공사이다.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독립적인 정부 부처로서 1998년부터는 연방안보이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는 독일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국가안보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장준호 외, 2008). 또한 경제협력개발부를 독립 부처로 운영하는 것은 개발협력정책을 대외정책과 분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전체 ODA 예산의 54% 정도만을 집행하고, 주로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KfW 개발은행에서 15%,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기술협력공사가 9%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독자적으로 개발협력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안숙영, 2010). 따라서 독립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 사업 추진의 응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분절화된 집행 구조는 개발협력 정책에서 RBA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¹² 분절화된 집행 구조에서는 통합 구조에 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반적인 외교정책도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범국가라는 한계 때문에 인권레짐을 주도하기는 어렵지만, 인권레짐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여론의 지지 기반은 확고한 편이다. 2007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빈곤국의 기아 문제가 자신에게도 중요

12. 독일은 분절화된 원조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조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특히 2011년에는 기술협력 및 인적자원 교육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여 GIZ라는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켰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a).

한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장준호·정복철, 2008). 한편 독일은 원조 예산의 6%를 NGO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독일은 NGO와의 협력 사업에서 NGO의 독립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NGO들은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OECD DAC, 2010). 이와 같이 여러 요소들의 상호 작용 결과 독일의 RBA 수준은 중위 그룹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다.

IX.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그 동안 주로 정책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던 국제개발협력의 영역과, 규범주의적, 사례중심적 접근이 대세였던 RBA에 관한 연구를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RBA의 수행 수준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권의 사회과학 및 지역 연구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출발했다. 우선, 8개 주요 공여국들의 RBA 수행 수준을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RBA 원칙 도입 수준의 국가 간 차이를 낳은 거시적,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불리언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는 단계를 밟았다. 이 과정을 통해 비교사회학적 연구 설계와 방법론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RBA의 주요 요소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섯 가지 지표에 주목했고, 이를 종합한 RBA 통합지수를 활용하여 8개의 국가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상위그룹에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중위 그룹에는 미국과 독일, 하위그룹에는 프랑스, 일본, 한국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 간의 차이를 낳은 조건으로 개발협력 집행 구조, 여론의 지지, 외교정책노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가설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분석 결과 여론의 지지를 제외한 세 가지 조건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위 그

룹 보다는 상위, 하위그룹의 국가들을 설명하는데 이상의 이론적 분석들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때 각각의 요인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과성을 갖는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결합적인 인과성’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설명틀이 보다 일반화된 이론으로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OECD DAC 회원국 전체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세 가지의 인과성의 조합이 여전히 의미 있는 설명 요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인권주류화 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적 탐색과 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불리언 분석과 같은 질적 접근법이 다시 한 번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통계적인 횡단 시계열 분석(cross-sectional time series)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OECD DAC 회원국 전체의 RBA 수행에 관한 탐색적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분석한 8개 국가들의 사례가 전체 공여국들에서의 변화 흐름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인권이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¹³ 이와 같이 RBA에 대한 압력과 강조가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8개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OECD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RBA의 수행에 대한 보다 충실한 국가 간 비교와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RBA를 측정하는 독립적인 지표 및 지수의 구축이 절실하다(이태주, 2012). 우선 각 공여국이 RBA 주류화를 위해 투입한 자원, 제정한 법률, 수행한 프로그램, 원조금액 배분의 행태 등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로 어느 정

13. 가령 오스트리아는 2003년에 개정된 개발협력법에 개발협력의 세 가지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민주주의, 법치, 인권, 굿거버넌스 달성을 통한 파트너국의 평화와 안정을 포함시켰다. 포르투갈도 2005년에 만든 개발협력의 전략적 비전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1999년 제정된 벨기에의 개발협력 관련법에도 다섯 가지 주요 영역 중의 하나로 인권 존중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통한 갈등 방지가 제시되었다(OECD DAC, 2009/2010).

도로 달성되었는지, 즉 어떻게 파트너국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도 필수적이다. 독립적인 RBA 지표 및 지수의 구축은 국제개발협력 및 인권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심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조금액의 배분 과정에 인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국의 인권 상황과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별도의 지표체계가 필요하다. 이때 기존의 글로벌 인권지수 및 거버넌스 지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파트너국과의 (인권)정책대화 과정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여국들은 ODA를 도덕적 책임을 넘어 인권법적 의무로 수행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또한 파트너국들은 인권적 의무에 대해 자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양영미, 2011). 그러나 공여국이 인권,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개선에 미온적인 개도국 정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도덕적, 정의론적 책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Kolstad, 2009). 한편, 2011년 아랍의 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ODA와 인권을 분리시키려는 개도국 정부는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없고, 이러한 ‘탈인권화’의 시도가 중장기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다른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RBA 수행 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외교정책 노선, 개발협력정책 집행구조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규범의 팔로워가 아니라 이노베이터로서 그 위치를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적 재검토가 요구된다(이숙중, 2012). KOICA의 주도적 노력으로 원조정책의 환경 및 젠더 주류화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았던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인권 및 거버넌스 주류화를 위한 노력은 무상원조에서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인권없는 외교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RBA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RBA와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파트너국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오래된 논리는 이제는 공색한 변명이다.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정책의 도입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신장과 국격 상승, 인도주의적인 중견국가로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고일자: 2013-08-19 심사일자: 2013-11-27 게재확정: 2013-12-04

참고문헌

- 고세훈. 2011. 「복지국가와 공적개발원조: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적 토대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 제2호.
- 구정우. 2012. 「개발협력의 역사적 전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 구정우·김대욱. 2011.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한국사회학』 45집 1호. pp. 153-190.
- 김강이. 2011.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와 한국 원조사업의 방향 - 한국국제협력단과 노르웨이 전 처치에이드(NCA)의 에티오피아 식수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협력연구』 3(2). pp. 155-196.
- 김성현. 2007. 「USAID와 개발도상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여름호.
- 김은미·김지영·김지현·조혜림. 2010.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 현황과 KOICA의 대응방향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자료 정책연구, 2010-05-030.
- 김인춘. 2011.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전략: 스웨덴 복지 모델의 관점」. 『국제개발협력』 제2호.
- 김치욱. 2009.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의 중견국가: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 논총』 제49집 1호.
- 김태균. 2012a. 「세계은행의 책무성(Accountability) 기제에 관한 小考」. 『한국의 개발 협력』 제3호.
- _____. 2012b. 「개발협력의제의 사회적 구성: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복합네트워킹의 정치학」. 『국제개발협력연구』 제4권 제1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a. 「최근 선진공여국의 ODA 개혁조치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1년 3월 15일.
- _____. 2011b.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1년 6월 27일.
- 보르 안드레아센·스티븐 마크스. 2005.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 손혁상. 2011.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적 접근과 캐나다 ODA 책무법」.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pp. 403-425.
- 안숙영. 2010.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3호.
- 양영미. 2011. 「인권을 생각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사회의 개발과 인권의 통합 노력과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제1호.
- 이상백. 2009.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지지도와 ODA 규모의 상관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훈. 2012.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ODA: 19대 국회와 한국정부의 민주주의 공공외교 과제」.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회 자료집.
- 이숙중(편). 2012.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 이태주. 2012. 「개발효과성과 인권기반 ODA의 적용 과제」. 제4차 KOICA-세종 콜로키움 발표 자료.
- 장준호·정복철. 2008. 「국제개발협력의 두 가지 모델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3호.
- 장현식·아더 엠 펠·마이클 레어드. 2007. 『OECD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관리체계의 비교』.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자료 정책연구 2007-6-141.
- 정상희. 2011. 『선진 원조 집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가별 비교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자료 정책연구 2011-25-197.
- 정진성·공석기·구정우. 2010.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국인권재단. 2007. 『ODA 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 홍문숙·강선주·김현정·문기홍·여국희·이명근. 2012.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연구: 긴급구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KOICA 연구보고서 2012-11-167.
- Alesina, A. and 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 Barry Buzan. 2006. "Will The 'Global War On Terrorism' be The New Cold War?" *International Affairs*, 82: 6.
- Berthelemy, J. and A. Tichit. 2002.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 A Three-dimensional Panel Analysis." *WIDER Discussion Paper*, 2002/123.
- Cingranelli, D. L. and T. E. Pasquarello. 1985. "Human Rights Practices and the Distribution of U.S. Foreign Aid to Latin Americ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3): 539-63.
- Donnelly, Jack. 박정원 역. 1998/2002. *International Human Rights* 『인권과국제정치』 (오름).
- Dreher, Axel, Mölders, Florian, and Peter Nunnenkamp. 2007. "Are NGOs The Better Donors? A Case Study Of Aid Allocation For Sweden." *Kof Working Papers* 180.
- Drury, A. Cooper, Richard Stuart Olson, and Douglas A. Van Belle. 2005. "The Politics Of Humanitarian Aid: U.S. Foreign Disaster Assistance, 1964-1995." *The Journal Of Politics*, 67(2): 454-473.

- Furuoka, Fumitaka. 2005. "Human Rights Conditionality and Aid Allocation."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Volume 4, issue 2.
- Gates, S. and A. Hoefler. 2004. "Global Aid Allocation: Are Nordic donors different?" *Working paper*, Center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 Hafner-Burton Emilie M. and Kiyoteru Tsutsui. 2005, "Human Rights in a Globalizing World: The Paradox of Empty Promis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5): 1373-1411.
- Hamm, Brigitte I. 2001. "A Human Rights Approach to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23(4): 1005-1031.
- Hans Peter Schmitz. 2011. "A Rights-based Approach (RBA) in Practice: Evaluating NGO Development Efforts." Paper prepared for the 2011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PSA), September 1-4, Seattle, Washington.
- Hook, S. W. and G. Zhang. 1998. "Japan's aid policy since the Cold War: Rhetoric and Reality." *Asian Survey*, 38(11): 1051-1066.
- Katada, S. N. 1997. "Two Aid Hegemons: Japanese-US Interaction and Aid Allocation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orld Development*, 25(6): 931-945.
- Koch, Dirk-Jan. 2007. "Blind Spots on the Map of Aid Allocations Concentration and Complementarity of International Ngo Aid." *Unu-Wider 2007 Research Paper No. 2007/45*.
- Kolstad, Ivar. 2009. "Human Rights and Assigned Duties: Implications for Corporations." *Human Rights Rev*, 10: 569-582.
- Lancaster, Carol. 2007.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zels, A. and M. K. Nissanke. 1984. "Motivations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12(9): 879-900.
- McKinlay, R. and R. D. Little. 1977. "A Foreign Policy Model of US Bilateral Aid Allocation." *World Politics*, 30(1): 58-86.
- Milner, Helen V. and Tingley. 2010. "Who Supports Global Economic Engagement? The Sources of Preferences in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 Murdie, Amanda and David R. Davis. 2012. "Shaming and Blaming: Using Events Data to Assess the Impact of Human Rights INGO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6(1): 1-16.
- Neumayer, E. 2003. "Is Respect for Human Rights Rewarded? An Analysis of Tot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Flows." *Human Rights Quarterly*, 25(2): 510-527.
- Nikitina, Larisa and Fumitaka Furuoka. 2008. "Japan's Foreign Aid Sanctions Policy after the End of Cold War." *MPRA Paper*, No. 6757,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 OECD DAC. 1995.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Development Co-operation Guidelines Series.
- _____.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 _____. 1997. *Evaluation of Programs Promot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Synthesis Report*.
- _____. 2003. *Aid Effectiveness and Selectivity: Integrating Multiple Objectives into Aid Allocations*.
- _____. 2006. *The Development Dimensi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Donor Approaches, Experiences and Challenges*.
- _____. Peer Review: Austria(2009), Belgium(2010), Canada(1998, 2002, 2007), France(2000, 2004, 2008), Germany(1998, 2001, 2005, 2010), Japan(1996, 1999, 2003, 2010), Korea(2008), Portugal(2010), Sweden(1996, 2000, 2005, 2009), United Kingdom(1997, 2001, 2006, 2010), United States(1998, 2002, 2006, 2011).
- Poe, S. C. 1992. "Human Rights and Economic Aid Under Ronald Reagan and Jimmy Carte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1): 147-167.
- Ragin, Charles.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nd, Jude and Gabrielle Watson. 2007. *Rights-Based Approaches. Learning Project*. Boston/Atlanta: Oxfam America/CARE USA.
- Riddell, R. 2007.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Mary. 2006. "What Rights Can Add to Good Development Practi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oward Mutual Reinforcement*.
- Sarelin, A.L. 2007.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HIV/ AIDS, and Food Security." *Human Rights Quarterly*, (29): 460-488.
- Schmitz, Hans Peter. 2011.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in Practice: Evaluating NGO Development Efforts." *Polity*, 44(4): 523-41.
- Selbervik, Hilde and Knut Nygaard. 2006. "Nordic Exceptionalism in Development Assistance?: Aid Policies and the Major Donors: the Nordic Countries." *CMI Report*, 2006:8.
- Somers, Margaret and Christopher N.J. Roberts. 2008. "Toward a New Sociology of Rights: A Genealogy of "Buried Bodies" of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s*, 4: 385-425.
- Tarrow, Sidney. 2005. *The New Transnational Activ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jen, Demirel-Pegg and James Moskowitz. 2009. "Us Aid Allocation: The Nexu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Development." *Journal of Peace Research*,

- 46: 181.
- Tingley, H. Dustin. 2010. "Donors and Domestic Politics: Political Influences on Foreign Aid Effort."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 Tuman, J. P. and A. S. Ayoub. 2004. "The Determinants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Africa: A Pooled Time Series Analysi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0(1): 45-57.
- Tuman, J. P. and J. R. Strand. 2006. "The Role of Mercantilism, Humanitarianism, and Gaiatsu in Japan's ODA Programme in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6(1): 61-80.
- UN. 2005.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 UN. 2009.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9: The State and Development Governance*.
- Uvin, Peter. 2004.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Woodiwiss, Anthony. 2011. "Making the Sociology of Human Rights More Sociological." *Development and Society*, 40(1) (June 2011): 117-132.
- World Value Survey. 2009. *2005 World Value Survey Codebook (v.20090415)*.
- Zafarullah, Habib Mohammad, and Mohammad Habibur Rahman. 2002. "Human Rights,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Nexus in Banglades." *Human Rights Quarterly*, 24(4): 1011-34.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in Eight Major Donor Countries, 1990~2009

Jeong-Woo K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Dae-Wook Kim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degree to which eight major donors implement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RBA) in their polic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Furthermore, it explicates the factors that might have led to the differences among the donors using the Boolean Analysis. In an effort to measure the degree of RBA implementation, we consider the ratios of ai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untied aid, humanitarian aid, and aid for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We then consider severa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that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degree to which donor countries consider and implement RBA.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are three tiers among donors that correspond to the differences of their commitment to RBA; the first tier (UK, Sweden, Canada), the second tier (US, Germany), and the third tier (France, Japan, Korea). Our analysis indicates that aid delivery structure, foreign policy framework, and the strength of civil society might be the major factors explaining the division among the countries especially in the first and the third tiers. This study provides a crucial policy implication for how to mainstream human righ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eywo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uman Rights, 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Rights-Based Approach (RBA), Boolean Analysis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교수회관 415호
Tel_02-760-0445 E-mail_jkoo@skku.edu

김대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3동 우정원 3층 인권센터
Tel_02-880-2424 E-mail_dwkim0311@gmail.com